

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34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5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시장의 권한사무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중 집단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함. (안별표)
- 나. 도시과 소관사무중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함. (안별표)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지방자치법 제95조
-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해당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동 별표중 구분란 “사회복지과”의 위임사무명 “6. 식품위생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”을 “6. 식품자동판매기영업, 식품접객업, 집단급식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”으로 하고 위임사무명 “6-1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사회 복지과	6-1. 집단급식소 설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	1. 집단급식소 신고	• 식품위생법 제69조 •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	구청장

동 별표중 구분란 “도시과”의 위임사무명 “2”의 단위사무명 “3” 및 “4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위임사무명 “3” 및 “4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도시과	2.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	3.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4.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	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4항 • 같은법 제122조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4항 • 같은법 제122조	구청장
	3. 토지거래 규제	1. 토지거래 계약의 검인 수리 2. 과태료의 부과·징수	•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제3조제1항 •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제12조	
	4. 개발행위허가	1. 토지형질변경 (면적 1,000㎡ 미만) 2. 토지분할허가 (면적 5,000㎡ 미만) 3. 토석채취허가 (부피 1,000㎥ 미만) 4. 물건적치허가 (면적 1,000㎡ 미만) 5. 공작물 설치허가	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 · 과		총 무 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총무과장 윤 은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조직관리담당 한 상 철
	담당자 성명 전화	권지혜 (행정 311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구분	위임 사무명	단위 사무명	근거 법령	수임 기관	구분	위임 사무명	단위 사무명	근거 법령	수임 기관
사회 복지과	1-5. (생략)			구청장	사회 복지과	1-5. (현행과 같음)			구청장
	6. 식품위생법에 대한 다음의 권한	1-5.(생략)				6. 식품자동판매기 영업, 식품접사업집단 급식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	1-5.(현행과 같음)		
		6. 위생등급	·식품위생법 제32조 ·감염병시행 규칙제43조					〈삭제〉	
		〈신설〉				6-1. 집단급식소설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	1.집단급식소 신고	·식품위생법 제69조 ·같은법시행 규칙제58조	
	7-8. (생략)					7-8. (현행과 같음)			
도시과	1. (생략)			구청장	도시과	1. (현행과 같음)			
	2.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	1-2. (생략)				2. 토지거래 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	1-2. (현행과 같음)		
		〈신설〉					3.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	·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8조 제4항	
		〈신설〉					4.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에 대한 선매지의 자정 및 통지	·같은법 제122조	
		〈신설〉				3. 토지거래 규제	1. 토지거래계약의 검인 수리	·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	
		〈신설〉					1. 과태료의 부과 장수	·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	